

자산보관 •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조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모펀드:프랭클린템플턴 재팬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

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/ 종류형 (A) / 모자형

다. 보관 •관리기간: 2012.05.09 - 2013.05.08

라. 집합투자업자: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신영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자증권, 부국증권, 한화투자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증권, SK증권, NH농협증권, 골든브릿지투자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메릴린치증권서울지점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키움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하나대투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대구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국민은행, 외환은행, 기업은행, 광주은행, 한국씨티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3.05.03	명칭(문서 전반)	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(A)(주식)	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2013.05.03	종류형 펀드로 구조 변경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, 제 9조(수익권의 분할), 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, 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, 제37조(수익자 총회), 제39조(보수), 제40조(판매수수료), 제41조(환매수수료), 제42조(기타 운용비용 등)	종류형 펀드로의 변경에 의한 신규 클래스들의 대한 정의, 수수료 및 보수의 신설
2013.05.03	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 청구일 변경	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	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
2013.05.03	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법령 개정	자산운용보고서,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	자산운용보고서,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

반영	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.	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다.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 을 통해 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삼일회계법인	1년	935,000 원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모펀드 기준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 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

- 부합함
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 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